

밀 생산·유통단지 지정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처리기간	30일
신청인	지방자치단체명		단체장명		
	사업자등록번호		전화번호		
	사무소 주소				
대상지역 현황	밀의 총 재배면적 · 계약재배면적		밀 생산농 가수		
	지정신청 사유				

「밀산업 육성법」 제12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
위와 같이 밀 생산·유통단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지방자치단체장(직인)

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

첨부 서류	1. 밀의 총 재배면적·계약재배면적, 밀 생산농가수 등 현황 자료 1부 2. 대상 지역의 지적도 1부 3. 「밀산업 육성법 시행령」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 인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----	-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